

## 회계제도개혁과 정당한 주의의무(due care)

박진우 상무(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I. 서론

미국이라는 선진국에서도 다국적 대기업이 분식 회계를 통한 반사회적 행위로 인해 그 파장효과가 엄청나 새로이 회계제도를 개혁하고 규제하는 Sarbanes & Oxley Act가 2002년에 발효되게 되었다. 이 법은 재무 정보의 수집과 공시를 더욱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하며, 더욱 많은 정보를 관리할 것과 또 이러한 재무정보관련 시스템을 테스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목표는 Enron과 WorldCom 등 대기업에서 일어난 회계분식으로 인해 미치는 불신의 파급효과를 방지하고 사장에서의 신뢰성 소멸에 종지부를 찍는 데에 있다.

우리나라도 기업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2002년 11월에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회계제도 개혁(안)이 2003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2004년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투명성을 중시하는 제도적 환경 변화로써의 우리나라의 회계제도개혁법은 크게 주주로 대표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도입, 최고 경영자의 인증의무 및 허위공시 등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증권거래법의 개정,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및 검토에 대한 내용 강화(“구구조조정촉진법 내용을 이관한 것임”), 그리고 외부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 업무를 특히 강조한 개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감사인의 비감사업무 제한 등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법의 개정이 그 주요 내용이라 할 수 있

겠다.

건설산업이 갖는 내수진작효과 및 노동력 창출의 기여도는 여타산업에 비해 매우 높음으로 인해 최근 건설경기 냉각에 따른 활성화 방안으로 정부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건설회사 각각은 이러한 외부 환경에 의존하여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비호를 피력하기 보다 철저한 심층분석을 통한 내실화를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하리라 본다.

특히 IMF 이후 활황을 이룬 주택업계도 부동산 시장의 수요가 급속도로 침체되고 미분양사태 및 정부의 분양가 담합조사 등 분양가 인상에 제동이 걸려 차기 이후 수익성악화가 심히 우려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 할 때 내실화를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투명한 경영, 정도 경영이 요구되는 시기라 생각된다.

다음에는 이러한 기업투명성을 정착시키고 유지 관리하기 위해 필수적인 회계투명성을 위한 회계제도개혁법의 소개와 그 이론적인 배경이 되는 미국의 Sarbanes & Oxley Act에 초점을 둔 공시통제 및 절차(Disclosure Control & Procedure)제도 및 CEO/CFO 인증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 1. 회계제도 개혁법

우리나라의 경우 회계제도 개혁법과 관련하여서는 1)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도입 2) 증권거래법의 개정, 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

감사위원회 혹은 기업의 감시기구인 감사 혹은 이사회의 검토 및  
승인에 의한 업무 부분은 폭넓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받게 하므로써  
적절히 조율된 운영이 필요하다 하겠다.”

”

4) 공인회계사법의 개정과 같은 일련의 법률적 내용을 개정 또는 변경하거나 신규로 도입하여 기업 투명성을 위한 환경변화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 1)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증권집단소송제도는 자산 총액 2조원이상의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을 앞두고 기업과 회계법인 등은 바짝 긴장하고 있으며, 소액 투자자들은 권리구제의 가능성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표정 들이다.

이러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는 분식회계, 허위 공시, 주가조작 등 증권시장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수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행된 법으로 경영진을 상대로 쉽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영진의 불법행위 혹은 의무 해태로 인한 소액주주의 손해를 제도적인 측면에서 구제하고 원인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다만 의미있는 제도라 할 지라도 소의 남발 등 운영의 미숙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비능률과 생산성 저하 역시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남게 되며 따라서 그 운영의 묘가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 2)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상의 주요 개정 내용은 유가증권신고서 혹은 사업보고서 제출시 CEO / CFO가 중요한 사항의 기재, 표시의 누락 또는 허위기재 표시가 없

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 검토하고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이러한 CEOP/CFO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공시 서류의 허위 및 분식 작성과 관련된 CEO 등의 민·형사상 책임의 면탈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종속회사의 회계처리의 적정성까지 인증하여야 함에 따라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도입과 더불어 소송이 증가할 위험성이 가중되고 있다.

### 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과거 구조조정 촉진법에 의거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를 의무화 하였으나 재경부 유권해석에 의거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인의 의견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동 내용이 옮기면서 개정된 내용은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종합 결과를 감사보고서에 표명하도록 하여 한층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수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아직 규정되지 않아 법 적용에 다소 애로사항이 있으나 2004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발행할 2005년 상반기쯤에는 확정되리라 본다.

### 4) 공인회계사법

개정 공인회계사법에서도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의 비감사업무를 극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대폭 강화함으로 인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준수를 어느 때보다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 감사업무의 범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차깃 서비스를 구하는 기업 입장에서의 비능동 내지 비효율적인 요소가 독립성이란 조건에 의해 배가된다면 이 또한 큰 사회적 손실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감사위원회 혹은 기업의 감사기구인 감사 혹은 이사회의 검토 및 승인에 의한 업무 부분은 폭넓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받게 하므로써 적절히 조율된 운영이 필요하다 하겠다.

## II. CEO/CFO 인증제도 및 공시통제절차 (Disclosure Control & Procedure)

상기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도 issue화 된 회계제도 개혁법은 앞으로도 계속 그 강도를 더할 것으로 보이며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업 및 기업의 경영진은 이러한 법에서 정한 형식적 규제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불이익 혹은 적용범위의 해당 여부, 조건 등을 고려하여 단순히 그러한 제약을 회피할 방법을 찾는데 연연해 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제도 및 절차를 어떻게 구축하고 운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기업은 회계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많은 risk factor들이 상존해 있다.

특히 상장법인, 코스닥등록법인, 공개예정법인의 경우 회계정보의 적정성에 대한 CEO/CFO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무엇보다 재무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생성하고 보고하기 위한 내부통제절차(Disclosure Control & Procedure)나 사업보고서인증을 위한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기업은 물

론 임직원 특히 CEO/CFO에게는 민사상/형사상 책임에 대한 정당한 주의의무(Due Care) 입증이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이와 같은 회계환경의 변화로 인해 사업보고서 인증에 따른 민사상 책임 등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공시통제에 관한 내부통제절차 제도와 CEO/CFO인증 제도 구축이 필수 불가결하다 하겠다(그림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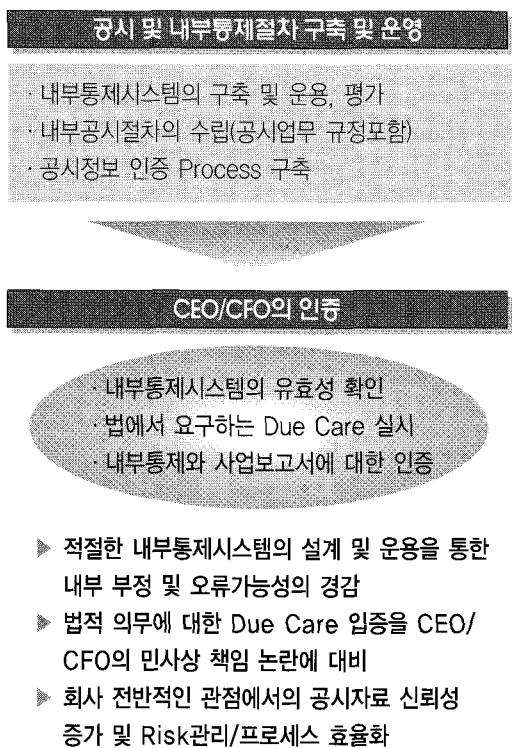
또한 이러한 CEO/CFO 인증 및 공시 및 내부통제절차의 구축을 통해 인증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자의 정당한 주의의무(Due Care) 입증이 용이할 것이며, 공시정보의 투명성 확대와 회사의 Risk 관리 및 프로세스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그림2 참조).

(그림1)

구 분	내 용
인증의무의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자는 다음의 사항을 인증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보고서의 재무 및 비재무 정보</li> <li>- 사업보고서 첨부서류</li> </ul> </li> </ul>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종합의 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li> </ul>
집단소송의 위험성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보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유가증권 취득자</li> </ul>

CEO/CFO  
인증절차 및  
공시 및 내부통제절차  
구축의 필요성 증대

(그림2)



### III. 결론

기업투명성의 출발점은 경영자라 볼 수 있다. 아무리 제도가 완벽하고 훌륭하다 해도 열 사람의 포졸이 한명의 도둑을 못 잡는다는 말과 같이 경영자자세의 확립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다.

또한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그 원천적인 취지와 달리 악용하는 주주나 채권자들이 있다면 그 건 애써 만들어 놓은 좋은 제도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본다.

나아가 사회전반적으로 기업윤리를 준수하고 투명한 기업이 그 대가를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긍정적 보상 제도가 필요하며 그 반대의 기업은 불이익과 법률상의 제재를 반드시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문화 풍토 조성이 요구된다 하겠다. “Strategic Finance” 5월호에서 발췌한 “Why Sarbanes-Oxley is good for business”에서 우리는 기업의 회계 투명성에 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부모님들과 식품영양학자들은 항상 우리에게 시금치가 좋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시금치 한 접시면 비타민 A,C,E의 1일 권장량을 채워준다. 게다가 시금치안에는 암과 백내장 등을 억제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항산화물도 들어있다.

그런데도 왜 당신은 동네 패스트푸드점에서 ‘즉석 시금치’를 사먹을 수는 없는 것인가? 아마 그것은 치즈 버거나 점보 프라이, 또는 진한 초콜렛 쉐이크의 유혹이 더 많은 판매를 불러오기 때문일 것이다.

많은 기업들(특히 공개된 기업들)은 Sarbanes-Oxley의 재무 공시 요구사항을 우리 대부분이 시금치를 대하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일단 각 기업의 CFO와 재무부서 및 IT부서로서는 갑작스런 일 데미를 떠안아야 할 부담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올바르게 시행되는 기업에게 장기적인 효익을 가져다 주는 일임에 틀림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계투명성을 위한 회계제도 개혁이라는 대의는 거스를 수 없는 선진화의 추세이다.

다만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맞추어 관련 기업들은 회사의 내부통제가 어떻게 구성되고 누가 책임을 지며 어떻게 확인되는지를 Monitoring하는 시스템을 설치하고 필요할 때 경영진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가깝게는 기업 내부 부정 및 오류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외부 이해관계집단에 대한 정당한 주의의무(Due care) 입증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멀리는 기업의 공시자료의 신뢰성 증가 및 내부 프로세스 개선과 risk의 효율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기업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